

도시관리계획(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86호(2013. 9. 5.)로 결정된 「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」 내 평창동 533-22번지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및 건축한계선 변경에 대하여 2024. 6. 13. 2024년 제2차 종로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어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7월 11일
종로구청장

1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교통시설 결정(변경)조서

1) 도로

■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 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1	A	8	집산 도로	1,020 (181)	대로 3-58	소로 2-2	일반 도로	-	서울특별시고시 제141호 (‘76.9.23)	-
변경	소로	1	A	8	집산 도로	1,020 (181)	대로 3-58	소로 2-2	일반 도로	-	서울특별시고시 제141호 (‘76.9.23)	종점부 가각 변경

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-1-A	평창동 533-22번지 도로제척 (면적 75㎡ 축소)	• 도시계획시설(도로)로 결정된 평창동 533-22번지는 인접 평창동 533-18번지와 공동개발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로서,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동개발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서 제척.

2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가.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계획

1)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

구분	계획내용(변경 없음)
건축한계선	• 주도로에 접한 전면부 : 2m (요철형필지 : 1m)
	• 주도로에 접한 전면부를 제외한 부분의 건축가능경계 : 1m

■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내용	변경사유
평창동 533-22번지 주도로 변경에 따른 건축한계선 위치 변경	• 평창동 533-22번지 현재 주도로는 평창길로서, 대지와의 고저차가 약 8m이며 옹벽이 존재함. • 대상지 현황을 반영하여 평창11길을 주도로로 변경하고 건축한계선 위치를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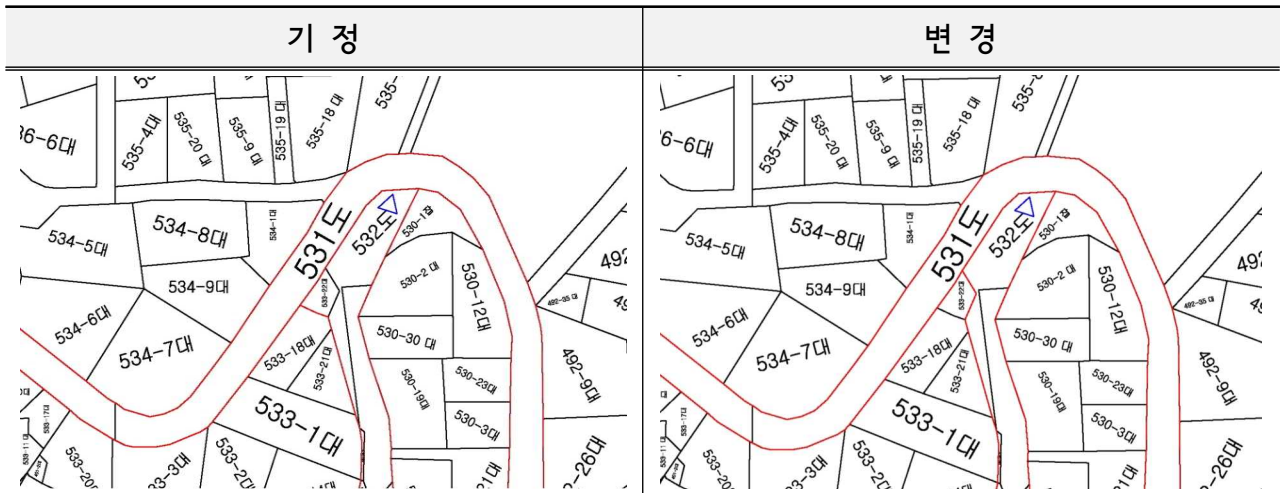
3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4. 관계도서는 종로구 도시개발과 (☎02-2148-2663)에 비치·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<https://www.eum.go.kr/web/am/amMain.jsp>) 및 서울도시계획포털(<https://urban.seoul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

■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